###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67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박균택·김태년·전진숙

전현희 • 김태선 • 김문수

서영교 · 조인철 · 민형배

김현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에"를 "지체 없이 이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를"을 "지체 없이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건을"을 "지체 없이 사건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	①			
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				
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				
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u>이에</u> 응하여야 한다.	<u>지체 없이 이에</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			
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	에 대한 수사) ①			
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u>이를</u>	지체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u>없이 이를</u>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	②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				
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				
의 장은 <u>사건을</u> 수사처에 이첩	<u>지체 없이 사건을</u>			
하여야 한다.				